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를”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법 제2장의2에 한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법 제2장의2에 한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② 법 제9조의2제3항의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기관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대체가능성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을 말한다.

제4조의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등)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2. 자체정상화계획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나.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다.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라.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내용

마. 경영 위기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를 위한 업무분장,

조직구조 및 운영체제 등 영업지속 계획

바.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서식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4(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의6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4명 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 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 라. 외국 금융감독기구 및 그 감독을 받는 외국금융회사
 2. 금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금융 관련 분야를 담당하여 행정부에서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금융에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소속 업무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⑧ 위원회 위원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5(일시정지 기간) 법 제1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정지 결정이 있는 때부터 최대 2영업일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를 말한다.

제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1의3.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 제출의 접수

1의4. 법 제9조의9제3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 조치 이행 결과의 접수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말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말한다.	제2조(금융기관) ----- ----- ----- ----- ----- ----- -----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 -----.
<신 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신 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법 제2장의2에 한한다)
<신 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법 제2장의2에 한한다)
<신 설>	제4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신 설>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② 법 제9조의2제3항의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기관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대체가능성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을 말한다.

제4조의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등)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것

2. 자체정상화계획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나.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다.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라.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내용

마. 경영 위기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를 위한 업무분장, 조직구조 및 운영체제 등 영업지속 계획

바.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서식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조의4(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의6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4명 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

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라. 외국 금융감독기구 및 그 감독을 받는 외국금융회사

2. 금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금융 관련 분야를 담당하여 행정부에서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투자 관련 업무 10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금융에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소속 업무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위원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5(일시정지 기간) 법 제1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정지 결정이 있을 때부터 최대 2영업일의 범위에서 금
<신 설>	

제6조의2(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를 말한다. 제6조의2(권한의 위탁)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1의3.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 제출의 접수 1의4. 법 제9조의9제3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 조치 이행 결과의 접수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부실정리계획의 수립·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예 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	--